

14:00~15:30 제 2 발표장

## 미국의 전자자금이체시스템에 관한 고찰

강 원 진

(부산대학교)

### 목 차

I. 序 論 .....	175
II. 전자자금이체의 기본개념 .....	176
III. 전자자금이체 시스템의 운영 .....	179
IV. 전자자금이체 관련법제의 검토 .....	181
V. 전자자금이체시스템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관계 분석 .....	191
VI. 전자자금이체방식의 국제전자결제시스템화를 위한 과제 .....	197
VII. 結 論 .....	203



## I. 序 論

정보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확산은 온라인(on-line)상에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전자결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전통적인 대금결제는 범용성 있는 화폐인 현금 외에 신용카드, 어음, 그리고 수표 등의 신용수단이 사용되어 왔고 국제 무역결제에서는 신용장, 추심 그리고 송금 방식 등이 사용되어 왔다. 전자상거래에서의 전자결제는 전통적인 결제수단으로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결제시스템이 요구되어 현재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수표, 전자자금이체, 그리고 무역카드 등의 새로운 전자결제수단이 등장하게 되었다.

대금결제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미국은 이미 1978년 전자자금이체법(Electronic Fund Transfer Act: EFTA)을 제정하고 전자거래상의 소액거래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인 기초를 마련한 바가 있다. 그 후 미국은 1989년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제4A편에 자금이체(Fund Transfers)라는 규정을 법전화하여 상업적 내지 거액거래를 규율하는 법제를 마련하여 전자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자금이체와 관련하여 규율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기타 결제시스템에 적용되는 법리를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은 특정 국내에서의 결제수단으로서만이 아닌 국제간의 결제수단으로도 발전될 여지가 많다.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전자자금이체를 규율하는 법제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은 전자상거래시대의 대량거래에 따른 거액결제 수단으로서의 사용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에 관련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미국의 법제를 참조하고 연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국의 전자자금이체 관련 법제를 검토하고 향후 국제 전자결제수단으로서의 발전과제에 관하여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미국의 전자자금이체법과 UCC 제4A편의 자금이체에 관련

된 법제 및 국제지급이체에 관한 유엔 표준법 등 결제시스템의 제도적 측면만을 검토하는데 한정한다. 또한 연구의 방법은 전자자금이체 관련 법제 등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 II. 전자자금이체의 기본개념

### 1. 전자자금이체의 의의

자금이체(Fund Transfer)란 원지시인의 지급지시(originator's payment order)로부터 시작하여 지시된 수익자에게 지급이행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일련의 거래를 의미한다. 이에는 원지시인의 지급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원지시인의 거래은행 또는 중개은행(intermediary bank)이 발행한 어떠한 지급지시도 포함된다. 자금이체는 원지시인의 지급지시에 따라 수익자의 은행이 승낙(acceptance)함으로써 완료된다.<sup>1)</sup> 따라서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 Transfer)란 이와 같은 자금이체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자금이체는 그 수단에 따라 서면자금이체와 전자자금이체로 나눌 수 있다. 서면자금이체는 자금이체가 서면에 기초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면에 의하여 처리되는 은행지로 및 우편대체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대하여 전자자금이체는 컴퓨터와 연결된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신호에 의하여 입출금에 관한 자료가 전송되는 자금이체로서, 전자단말기, 전화기, 컴퓨터 또는 자기테이프를 통하여 개시되는 자금이체로 고객이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에 차기(debit)하거나 대기(credit)하라고 금융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의에 의하더라도 전자적 수단, 계좌 및 금융기관의 정의에 따라 전자자금이체에 포함되는 거래의 범위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sup>2)</sup>

1) UCC § 4A-104(a).

2) 전자자금이체에 속하는 거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① 현금자동지급기·자동입출금기에 의한 현금인출, ② 자동입출금기에 의한 입금, ③ 현금자동지급기·자동입출금기에 의한 계좌이체, ④ 현금자동지급기·자동입출금기에 의한 서어비스이체, ⑤ 직불카드[EFT/POS Card]에 의한 이체, ⑥ 전자화폐에 의한 이체, ⑦ 은행지로업무 중 자기테이

전자자금이체는 일반적으로 직불예치(Direct Deposit)시스템<sup>3)</sup>, 자동입출금기(Automated Teller Machine: ATM), 판매점(Point of Sale: POS)직불거래 및 신용카드 거래를 포함한다. 대금결제에서 미국의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은 그 유용성은 다음과 같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즉 첫째, 수표보다 안전하다는 점이다. 1999년도에 미국정부에서 추계한 위변조 수표는 모두 미화 6천 5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수표보다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자자금이체는 지급당일 현금화 할 수 있으나 수표는 그러하지 못하다. 특히 수취인이 장기간 출타 중에는 사용하기가 어렵다. 셋째, 수표보다 일 처리가 훨씬 용이하다는 점이다. 일단 한번 직불예치 이용에 대하여 서명하게 되면 그 이후 사용이나 접속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갈 필요가 없다.<sup>4)</sup>

이와 같이 자금이체는 종래의 종이를 바탕으로 하던 것이 이제는 전자적 수단으로 전송되는 이른바 전자자금이체의 형태로 변모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이 발전에 따라 은행도 데이터의 전자적 전송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활발히 구축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향후 국제간의 자금이체도 활발하여 질 것으로 보인다.

## 2. 전자자금이체의 관계당사자

UCC에 규정하고 있는 전자자금이체의 관계당사자로는 원지시인(originator), 원지시인의 거래은행(originator's bank), 수익자(beneficiary), 수익자의 거래은행(beneficiary's bank), 그리고 중개은행(intermediary bank)을 들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전자자금이체에서의 관계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

전자자금이체는 은행에 의한 자금이체로 보통 의뢰인, 즉 원지시인이 지시를 행함으로써 자금이체가 개시된다. 원지시인으로부터 송신되어 온 메시지를 받

프(M/T)에 의한 대량지급거래·자동계좌이체(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처리되는 우편대체 포함). ⑧ 계좌간자동이체와 납부자자동이체. ⑨ 타행환거래 중 현금송금 및 추심대전송금 등.

⑩ 현금관리서비스에 의한 이체(CMS이체); 손진화, 전자자금이체법의현황과 과제, <http://www.kyungwon.ac.kr/~profsjh/eft/syn.htm>; 그러나 기업간 거액거래를 위한 미국의 전자자금이체법(UCC § 4A)에서는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거래를 포함하는 소비자자금이체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lvin C. Harrel, "Payment System Issues-UCC Article 4A: Regulation J,S, and D," *Consumer Finance Law Quarterly Report*, Winter, 1996, p.50.

3) 특히 직불예치 시스템은 2만 이상 금융기관의 참가로 미연방정부의 전자자금이체 프로그램에 가장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http://www.fms.treas.gov/eft/GENERAL.HTML#Introduction>

4) <http://www.fms.treas.gov/eft/question.html>

은 수신은행은 수신확인을 행하고, 메시지를 전자암호화하여 이를 수익자의 은행에 송신한다. 자금이체의 경우 송신은행과 수신은행이 다른 국가에 존재하든지 또는 지급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통화와 수익자가 소재하는 국가의 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국제자금이체가 된다. 전형적인 국제자금이체는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이 원지시인의 예금계정에서 차기하고 수익자의 은행은 수익자의 예금 계정에 대기한다.

대부분의 경우 각 은행이 외국의 은행과 거래할 경우에 원지시인이 자신의 거래은행에 행하는 지시는 전자적으로 이루어진다. 전자자금이체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포괄적이고 강행적인 법체계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미국통일상법전 제4A편에 있어서는 협의의 전송거래라기 보다는 광의의 자금이체 즉 금융기관의 포괄적 이체가 그 주된 규정대상이다. 그리고 지시는 원지시인으로부터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권리를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 이 시스템은 수출상이 수입상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여 추심을 위해서 수출상의 은행을 통하여 수입상의 은행에 전송되는 전통적인 추심과는 대조적이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지시와 전통적인 추심과의 기본적 차이점은 전자는 계약물품에 대한 지급이고, 후자는 선적화물에 관한 정보의 전송이다.

만일 송신은행과 수신은행이 결제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송신은행은 중개은행을 통하여 수신은행에 메시지를 전송하든지 혹은 중간은행을 통하여 전송한다. 이 경우 원지시인의 은행은 중간은행에 대해서 지시인의 지시에 따를 것을 요구하게 된다. 중개은행을 통한 자금이체는 SWIFT 시스템<sup>5)</sup>, 어음교환소 은행간 결제시스템(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 System: CHIPS) 및 연방준비이사회 전송망(Federal Reserve Wire Transfer Network: FedWire)이 주로 이용된다.

---

5) SWIFT를 통한 대금결제통신 건수는 1997년도 (540백만건), 1998년도 (609백만건) 그리고 1999년도 (609백만건)이었으며 1999년 기준으로 SWIFT 시스템 연결 국가는 189개국, 연결 기관은 6,797개이다; [http://www.swift.com/report\\_99/keystats.htm](http://www.swift.com/report_99/keystats.htm)

### III. 전자자금이체 시스템의 운영

#### 1. 지급지시

전자자금이체는 원지시인과 거래은행간의 약정으로 시작된다. 이에 따라 전자자금이체를 원하는 의뢰인인 원지시인은 자신의 거래은행에 이체를 지시하기만 하면 된다. 원지시인은 자금이체의 최초의 지급지시의 발신인이다.<sup>6)</sup> 원지시인은 자신의 거래은행에게 원지시인의 계정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수익자가 계정을 가지고 있는 수익자 거래은행계정으로 대변이체할 것을 지시한다.

원지시인은 지시의 송부자이며 “원지시인-> 원지시인의 거래은행 -> 중개은행 -> 수익자의 거래은행 -> 수익자”의 거래사슬<sup>7)</sup>에서 제1송부자가 된다. 여기서 지급지시를 수신하는 당사자는 항상 은행이 되지만 송부당사자인 원지시인은 반드시 은행일 필요는 없다. 이러한 원지시인은 자신의 지급지시가 올바르고 정확한 액수와 시기에 본인이 의도한자에게 송금되기를 기대한다. 만약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수익자를 위하여 지급지시를 승낙할 수 없는 경우 원지시인은 자신이 보낸 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sup>8)</sup> 또한 원지시인은 자신이 송부하는 지시를 정확하게 발송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예를 들면 이중으로 지급지시를 송부하거나 과도한 자금을 송부할 것을 지시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 2. 지급지시의 수신 및 지급지시의 이행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은 지시인의 지시를 이행할 수도 있지만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은 중개은행에게 지시할 수도 있다.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은 원지시인의

6) UCC § 104(c).

7) Ronald J. Mann, *Payment Systems and Other Financial Transactions*, A Division of Aspen Publishers, Inc., 1999, p. 163.

8) 이를 자금반환보증(money-back guarantee)이라 한다.

지시를 승낙하는 때에 원지시인으로부터 지급 받을 권리를 가진다.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은 수신한 지급지시를 수익자의 거래은행에게 다시 지시하는 경우 제2의 지시인이 되고 환급보증이라는 보호를 받게 된다.<sup>9)</sup>

거래은행은 일단 중개은행 자금이체시스템으로 지시를 송부하게 되면 이 지급지시를 철회할 기회를 상실한다. 따라서 거래은행은 원지시인의 지급지시를 이행하기 전에 먼저 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거래은행은 전형적으로 원지시인의 계정으로부터 해당자금을 인출하거나 보유함으로서 지시를 이행한다. 만약 거래은행이 이체시점에 자금을 확보할 수 없다면, 그리고 후에 자금을 추심 받을 수 없다면 거래은행은 원지시인의 지시를 거절할 수도 있다.<sup>10)</sup>

거래은행이 자금이체를 송부하기전에 원지시인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만약 원지시인의 지시대로 거래은행이 지급지시를 이행한다면,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은 원지시인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할 권리를 가진다.<sup>11)</sup> 원지시인으로부터 지급지시를 수신하고 지급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당사자인 중개은행을 선택하여 지급지시를 이행하도록 한다.

### 3. 지급지시 이행완료의 통지

수익자의 거래은행은 수익자에게 지급을 이행할 것을 지시하는 지급지시를 승낙하는 경우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지급 받을 권리를 가진다. 상업적인 자금이체에서는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수익자에게 전화나 미리 약정한 전자통신의 형태로 자금이 이체입금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만일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중개은행인 연방준비은행에 계정을 가지고 있다면 연방준비은행은 이메세지를 직접적으로 수익자의 거래은행의 연방준비은행 전자자금이체 시스템 접속망에 송신하고 동시에 지시금액만큼 수익자의 계정에 지급이체 한다.<sup>12)</sup> 만일 거래은행이 다른 연방준비은행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원지시인의 연방준

9) 만일 수익자은행이 지급지시를 승낙하지 않아 자금이체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그때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은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면제되며 자신이 이미 수익자 거래은행에게 지급하였던 자금을 반환 받을 권리를 갖게된다.

10) UCC § 4A-210(a).

11) UCC § 4A-402(c).

12) Regulation J § 210.29(a).

비은행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 거래은행의 연방준비은행에 메시지를 송신한다.<sup>13)</sup> 그 후 수익자의 거래은행의 연방준비은행은 그의 장부에 원지시인의 연방준비은행계정을 차변이체하고 수익자은행의 계정에 대변이체한다. 마지막으로 수익자은행의 연방준비은행은 은행접속망에 수익자의 거래은행으로 자금이체 메세지를 송부하게 된다.

## IV. 전자자금이체 관련법제의 검토

### 1. 결제관련 법제의 제정배경과 동향

어음법과 수표법을 국제적으로 통일화 하려는 노력의 결과 제네바(Geneva) 통일협약에 의하여 1930년에 통일환어음법(Uniform Law for Bills of Exchange), 1931년에 통일수표법(Uniform Law for Promissory notes)이 제네바에서 성립되었다. 대부분의 대륙법계 국가들은 이 협약에 의한 법제를 기초로 하고 있다.<sup>14)</sup> 특히 영국은 상관습법과 판례법에 근거하여 이미 1882년에 환어음법(Bills of Exchange Act)이 제정되었고, 미국도 이 법을 참조하여 1896년 통일유통증권법(Uniform Negotiable Instrument Act)을 제정하여 1924년에 모든 주에서 채용하다가 1951년에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의 제 3편으로 통합되면서 통일증권법<sup>15)</sup>에 의한 어음법·수표법은 폐지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유통증권의 지급거래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어음법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는 1988년 12월 9일 제

13) Regulation J § 210.30(b).

14) 한국의 어음·수표법은 이 통일협약의 가입국은 아니지만, 이를 기초로 1962년 1월 20일 상법과 함께 제정되어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15) 미국의 통일유통증권법이나 통일상법전에서는 유가증권법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데 반해, 영국의 환어음법은 환어음과 수표, 그리고 약속어음에 관하여만 규정하여 사채권, 주권 기타의 양도가능증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eutel's-Brannen, *Negotiable Instrument Law*, 7th ed., Cincinnati, 1948, p.1; 최기원, 「어음·수표법」, 박영사, 1991, 90면.

4차 유엔 총회에서 ‘국제환어음 및 약속어음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Bills of Exchange and International Promissory Notes)<sup>16)</sup>을 성립시켰다. 이 협약을 환어음의 준거법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 협약은 국제환어음(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 협약)이라는 기재가 표제에 있고, 그 본문 중에 ‘국제환어음’이라는 문언을 포함하고 있는 국제환어음에 적용한다”<sup>17)</sup>라고 명시하여야 한다.<sup>18)</sup>

상거래환경의 변화는 현존하는 유통증권법이 구식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법협회(American Law Institute: ALI)와 통일주법위원회 전국회의(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 NCCUSL)는 모든 비 현금 결제시스템, 즉 어음 수표, 신용카드, 전자자금에 관련된 법을 통합하기 위하여 이른바, 통일신지급법(Uniform New Payment Code: UNPC)이 초안 되었다.<sup>19)</sup> UNPC의 제1초안은 1981년에 기초되었고 제2초안은 1982년에 기초되었다. 이 법은 다양한 지급시스템에 대한 단일적이고도 법률적인 규칙과 전문용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연방법과 충돌하는 법조문이 많고 개정할 때마다 모든 주에서 입법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는 문제가 있어 입법이 보류되었다. 그 대신 수표에 대해서는 UCC,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대출진실법(Truth in Lending Act)이 각각 적용되고, 소비자보호측면에서는 전자자금이체법이 적용되었다.<sup>20)</sup>

미국 통일상법전중에서 제3편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s)과 제4편 은행예금 및 추심(Bank Deposit and Collections)은 결제와 관련된 법이다. 특히 제4편은 미국은행가협회(American Bankers Association: ABA)가 입안한 은행추심법(Bank Collection Code)에 기초를 두고 마련된 법이다.

16) 이 협약은 10개 국가가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초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환어음 및 약속어음에 관한 유엔협약은 모두 9장 90조로 구성되어 있다.

17)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Bills of Exchange and International Promissory Notes, 1998, Article 1(1); 만일 약속어음의 준거법 적용의 경우에는 국제환어음 대신에 그 자리에 약속어음을 기재하면 된다. 그러나 협약 제 1 조 3항에는 「동 협약은 수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UNCITRAL은 수표는 국제거래에 잘 이용되지 않고 각국의 은행제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새로운 규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최기원, 전계서, 707면.

18) 강원진, 「신용장론」, 박영사, 2000, 366-377면.

19) Fred H. Miller, "A Report on the New Payments Code," *The Business Lawyer*, Vol. 39, 1984, p. 1214.

20) 한국전산원, “인터넷 상거래를 위한 전자결제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1998, 84면.

## 2. 미국의 전자자금이체 관련법

미국은 1978년 전자자금이체법(Electronic Fund Transfer Act: EFTA)을 제정하고 전자거래상의 소액거래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인 기초를 마련한 바가 있다. 그 후 1989년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제4A편에 자금이체(Fund Transfers)라는 규정을 법전화하여 상업적 내지 거액거래를 규율하는 법제를 마련하였다.

### (1) 소액자금이체

통신산업의 발달에 따라 미국은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974년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전국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Electronic Fund Transfers: NCEFT)를 설치하고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제문제를 조사 검토한 보고서를 1977년 의회에 제출하였다.<sup>21)</sup> 이 보고서에 기초하여 1978년 의회의 승인을 얻어 전자자금이체에 있어서 소비자의 권리를 규율하는 최초의 연방법이 탄생되게 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전자자금이체시스템 참가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설정하는 기본적인 틀을 규정하는 데 있으며 주된 목적은 소비자 개인의 권리 규정에 있다.<sup>22)</sup>

전자자금이체에 포함되는 거래는 자금이체의 한 유형으로 예금 또는 출금일 수도 있고 단순히 어떤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의 자금이동이 될 수도 있다. 전자자금이체는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개시되어야 하며 금융기관에 대하여 어떤 계좌에 대변기장하거나 차변기장 할 것을 명령, 지시 또는 수권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계좌(account)라 함은 제1차적으로 개인, 가족 또는 가계를 위하여 개설된 요구불예금계좌, 저축예금계좌 기타의 소비자자산계좌로서 금융기관이 직접 간접으로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sup>23)</sup> 따라서 오직 신용계좌, 상업적 예금계좌와 관련된 예금계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sup>24)</sup>

21) NCEFT, *Electronic Fund Transfers in the United States: Policy Recommendations and the Public Interest*,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7.

22) EFTA § 902(b).

23) EFTA § 903(2).

24) D. Baker & R. Brandel, *The Law of Electronic Fund Transfer Systems*, 2nd ed.,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들은 1970년대부터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하여 전자자금이체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판매점 직불거래 단말기를 이용한 직불카드도 도입하였다. 무책임한 신용카드의 마케팅활동과 남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연방준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에 의하여 채택된 소비자보호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보호 주창자들과 금융서비스 제공자들은 ATM카드사용에 대한 소비자 보호문제를 제기하였다. 소비자와 소비자 보호론자들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위한 소비자 보호규정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본적인 차이점은 신용카드거래에서는 사기 및 오류에 의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우선적으로는 카드발행인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반면 직불카드 거래에서는 이와 같은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카드소지인의 비용으로 처리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금융기관이 고객의 계좌에 입금을 시킬 것인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동안 금융기관에 있는 카드소지인의 계좌는 잔액이 없는 채로 남아 있을 수 있다.<sup>25)</sup> 소비자는 무권한이체<sup>26)</sup>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되 이 경우 소비자의 책임은 미화 50달러로 제한하고 있다.<sup>27)</sup>

미국의 소액결제는 주로 수표교환제도, 자동어음교환소(Automated Clearing House: ACH), 은행카드공동망 등을 통하여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sup>28)</sup>

## (2) 거액자금이체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전자자금이체를 통한 거액자금결제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정의하고 있는 어떤 포괄적인 법도 없었다. 당사자간의 계약이 이들 문제의 일부를 규율하였지만 이들 계약은 포괄적이거나 통일성은 없었다. 주계약과 관련되어 해결될 수 없는 분쟁에 직면한 법

---

Warren, Gorham & Lamont, 1988, 12.94[2][b]; 손진화, “전자자금이체거래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0, 123-125.

- 25) Jane Kaufman Winn, “Clash of the Titans : Regulating the Competition between and Emerging Electronic Payment Systems,” *Berkely Technology Law Journal*, Vol. 14, Spring 1999, pp.688-689.
- 26) 무권한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소비자 이외의 전자자금이체를 개시할 실제의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개시되는 소비자계좌로부터의 전자자금이체로서 소비자가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EFTA § 903(11).
- 27) EFTA § 909(a)(1).
- 28) 미국은 지역이 넓고 예금취급기관 수가 많기 때문에 140여개의 지역수표교환소, 60여개의 CD/ATM 공동망, 25개의 EFT/POS 공동망, 12개의 지역 준비은행 및 3개의 민간 ACH 센터를 통하여 소액결제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한국전산원, 전계논문, 85면.

정은 수표로 결제되는 지급방법을 규율하고 있는 미국통일상법전 제3편과 제4편 그리고 계약과 관련된 보통법의 원칙에 의존하여 왔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 외의 상업적인 성격의 거액거래의 전자자금이체는 이러한 법규법의 범위밖에 존재하였다. 따라서 기업간의 자금거래에 한정해서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체계적인 법제가 불충분한 현실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은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포괄적 입법이지만, 상업적 전자자금이체(commercial electronic fund transfer), 즉 거액지급이체(wholesale credit transfer)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1978년에 제정된 미국의 연방 전자자금이체법은 소비자 전자자금이체(consumer electronic fund transfer)와 추심이체(debit transfer)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자금이체와 관련하여 규율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기타 결제시스템에 적용되는 법리를 유사하게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다.

1989년의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sup>29)</sup>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의 특징은 거래대상자금이 거액이어야 하며 거래당사자가 기업 또는 금융기관으로서 거래가 즉시로 이행되며 비용이 저렴하고 당사자간의 위험을 배분하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본법의 대상은 고객인 원지시인, 원지시인의 거래은행, 중개은행, 수익자의 거래은행, 그리고 수익자이다. 또한 ACH를 이용하여 전자자금이체법에 의해 지급되는 소비자 결제에 관하여 UCC 제4A편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관간 전자자금이체와 유사한 비소비자의 자동어음교환소에 의한 결제금액은 거액에 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통일상법전 제4A편이 적용된다. 한편 통일상법전 제4A편은 국내자금이체에 적용되기도 하고 합의에 의하여 국제자금이체거래를 하는 당사자를 규율하는 법으로도 선택될 수도 있다.

29) 제1장은 적용범위, 지급지시 및 자금이체 등 용어의 정의, 연방준비규정과 운영안내, 연방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소비자거래의 배제에 관한 내용을, 제2장에서는 지급지시의 발송과 승낙에 관한 규정으로서 보안절차, 입증된 지급지시, 무권한 지급지시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보고할 의무와 지급의 반환, 지급지시의 오류, 지급지시의 거절, 지급지시의 수정과 취소, 승낙되지 않은 지급지시에 대하여 수신은행의 책임과 의무를, 제3장은 수신은행에 의한 송신자에 대한 지급지시의 실행을 규정하고 지급지시의 실행에 있어 수신은행의 의무, 지급지시의 오류 이행, 오류 이해된 지급지시에 대하여 송신자에게 보고할 의무, 지급지시의 지연 이행, 부적당한 이행, 지급지시의 실패를, 제4장에서는 수신은행에 지급할 송신자의 의무, 수익자에게 수익자은행이 통지하거나 지급할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5장에서는 이자율, 준거법과 기타 규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거액자금이체는 연방준비이사회의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인 “FedWire”와 뉴욕어음교환소협회(New York Clearing House Association)가 운영하는 어음교환소 은행간결제시스템(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 Systems: CHIPS)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운영 예를 보면 미국은 <표 4-1>에서와 같이 FedWire를 통하여 1999년도에 일일 이체 건수가 407,925건에 일일 평균 미화1조 3천 6백만 달러를 이체시키고 있으며, 또한 <표 4-2>에서와 같이 CHIPS를 통하여 일일 평균 20여만건의 자금이체가 행하여지고 있다.

<표4-1> FedWire에 의한 연도별 전자자금이체 규모

연도	이체건수	연성장률 (%)	이체금액 (미화백만 달러)	연성장률 (%)	일일평균 이체건수	일일평균 이체금액 (미화백만달러)
1995	75,894,343	5.3	222,954,083	5.6	302,368	888,263
1996	82,590,787	8.8	249,140,021	11.7	327,741	988,651
1997	89,510,261	8.4	288,419,808	15.8	356,615	1,149,083
1998	98,095,841	9.6	328,748,912	14.0	389,269	1,304,559
1999	102,797,106	4.8	343,381,658	4.5	407,925	1,362,626

자료: <http://www.bog.frb.feb.us/paymentSystems/FedWire/annual.pdf>

<표4-2> CHIPS에 의한 연도별 전자자금이체 규모

연도	영업일	참가자수	총금액 (천미달러)	총거래건수	일평균 거래건수
1995	251	111	310,021,249,560	51,032,782	203,318
1996	252	104	331,541,104,158	53,489,396	212,260
1997	251	95	362,186,525,130	58,971,837	234,948
1998	252	85	350,372,302,940	59,075,806	234,428
1999	252	77	297,933,674,255	57,252,350	227,192
2000*	232	68	270,965,292,725	55,056,856	237,314

\*2000년도는 11월 30일 기준임.

자료: <http://www.chips.org/stats.htm>

특히 FedWire 시스템은 결제의 완성도가 높고 거래위험이 낮다. 연방이체를 통한 자금이체는 수신이 이루어지면 취소가 불가능하며 지급이 즉시 이루어진다. 순정산이 거래일이 끝날 때 이루어지는 CHIPS 시스템을 통하는 경우와 같이 거액자금이체가 연방이체 시스템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시스템적인 위험의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전국적인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불이행의 연쇄반응을 방지하기 위하여 CHIPS는 한 금융기관이 거래 일이 끝날 때 채무를 결제하지 못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련의 관리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에서는 CHIPS와 같은 자금이체 시스템이 결제를 하지 못하게 되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CHIPS는 1972년에 업무를 시작한 이래로 아직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적은 없다고 한다.<sup>30)</sup>

한편 미국 재무부는 <표 4-3>에서와 같이 범정부 국고지급과 관련하여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총 지급액의 70% 대를 상회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확대시킬 계획으로 있다.

<표 4-3> 미국 재무부의 전자자금이체 현황(1999.10.1~2000.9.30)

(단위: 미달러)

범정부 국고지급운용항목	2000년 회계연도 결제금액*	전자자금이체 결제비율	수표 결제비율
급여/특별수당 지급	60,200,123	96%	4%
연금 지급	705,993,889	75%	25%
도급, 공과금 지급	15,572,512	59%	41%
연방세 지급	100,207,255	29%	71%
기타 잡비 지급	10,153,971	37%	63%
총 결제액(세액포함)	892,127,750	70%	30%
총 결제액(세액 불포함)	791,920,495	75%	25%

\* 국고금 이외는 포함하지 아니함

자료 : <http://www.fms.treas.gov/eft/AGEJNCY/v063000.htm>

30) Jane Kaufman Winn, *op. cit.*, pp. 685-686.

### 3. 국제지급이체에 관한 유엔 표준법

국제간의 전자이체거래에 관련된 표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는 1987년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법률지침(Legal Guide on Electronic Fund Transfer)을 기초로 1992년 5월 미국 뉴욕에서 국제지급이체에 관한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 표준법(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redit Transfers)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이 법도 미국 법제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과 실체적으로 유사성이 있지만, 적용범위, 은행의 의무, 법의 충돌에 관해서는 차이가 있다.<sup>31)</sup>

이 법의 입안 과정을 살펴보면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가 1986년 제19차 회기에서 그 사무국에 대하여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법률지침을 작업을 승인하는 결정과 관련하여,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표준규칙초안의 준비를 위하여 이 작업을 실무작업반에 맡기기로 결정하였다. 실무작업반은 이 작업의 초안을 1991년 UNCITRAL의 제24차 회기에 제출하여 심의에 상정하였으며, 이 회의에서는 심의의 결과 국제자금이체에 관한 표준법 초안을 채택하였다.

최종 검토를 마친 표준법 초안은 1992년 뉴욕의 UNCITRAL의 제25차 회기에서 심의를 거쳐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의 국제지급이체에 관한 표준법<sup>32)</sup>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이 표준법은 모두 4개장 19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당사자의 의무, 제3장은 지급이체의 불이행, 촉오 또는 자연의 효과, 제4장은 지급이체의 완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표준법의 명칭은 실무작업반의 제18차 회기에서 채택되었는데, 실무작업반이 표준법(Model Law)과 지급이체(Credit Transfer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 이유는 이 법이 각국의 입법부에 의한 이용을 예정하고 있고 또 당분간은 조약의 형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며 자금이체 중 추심이체(debit transfers)를 제외하고 지급이체만을 포함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적(electronic)이라

31) Clayton P. Gillette, Alan Schwartz, Robert E. Scott, *Payment Systems and Credit Instruments*, The Foundation Press, Inc., 1996, pp. 606-608.

32) A/47/17, UNCITRAL YEARBOOK, Vol. XXIII: 1992(N.Y UN, 1994), Annex II.

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표준법이 전자적 수단에 의한 자금이체와 함께 서면자금이체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표준법을 국제간의 자금이체에만 적용하기로 한 이유는 국내자금이체와 국제자금이체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가 차이가 있고, 나아가 국내의 자금이체에 관한 각국의 해결책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그 결과 표준법이 모든 자금이체에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sup>33)</sup>

#### 4. 유엔 표준법과 미국 통일상법전의 비교

유엔 표준법이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에 영향을 받아 제정되었기 때문에 통일상법전과는 유사한 점도 많지만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첫째 간접손해(consequential damages)의 부담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은 그러한 손해를 위해 만들어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손해에 대해 보상을 금지하고 있다. 유일한 예외는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수익자에게 자금을 정확히 지급하지 않으면 그 결과 상당한 간접손해가 발생한다는 특별한 환경에 대한 통지를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수령한 이후에도 수익자에게 이체지급을 거절한 경우에는 이러한 손해를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부담할 것을 인정하고 있다.<sup>34)</sup> 이처럼 일부 이체환경에서 간접손해를 허용하는 미국 통일상법전의 규정과 간접 손해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는 표준법과는 상이하다.<sup>35)</sup>

그러나 유엔 표준법 제18조에서는 약정에 의해서 요구되지 않는 간접 손해에 대해 은행이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러한 구제책에 대하여 과도한 제한적 성격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 통일상법전 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이유는 미국 금융기관들은 그들의 고객에게 손해를 끼칠 특정한 의도를

33) <http://www.kyungwon.ac.kr/~profsjh/eft/ml-ict.htm>.

34) UCC § 4A-404(a).

35) 유엔 표준법 제17조에서는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과 유사한 이자 와 비용의 복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독점적인 조항이다. 다만 은행이 (a) 손실을 유발시킬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b) 그러한 손실이 일어날것이라는 실제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지급지시를 부적절하게 이행하였거나 또는 지급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만 구제책이 존재 할 뿐이다.

가지고 행동하거나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실제적인 지식을 가지고 행동할 때 간접 손해를 부과하는 이 규칙에 대해 걱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자금반환보증(money-back guarantee)과 관련된 사항이다.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sup>36)</sup>에서는 지시에 대한 이행으로서 원지시인이 그의 거래은행에게 제공한 자금을 거래은행으로부터 원지시인이 완전히 반환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반환 받을 송부자의 권리는 약정에 의해 변할 수 없다.<sup>37)</sup> 그러나 유엔 표준법에서는 송부자와 수신은행은 신중한 원지시인의 거래 은행이 지급이체와 관련하여 중요한 위험 때문에 특정한 지급지시를 달리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 자금반환보증을 변경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sup>38)</sup> 이 법은 전쟁위험 또는 자금이 이체되는 동안 자금이 분실될 우려가 있는 심각한 다른 혼란의 위험국가에 대하여 위험성 있는 자금이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은행과 고객에게 허용하고 있다. 이 조항이 기술적으로는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의 조항과 다르지만 큰 차이를 인식하기는 어렵다. 또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자금을 반환 받는 것을 원지시인에게 허용한 미국 통일상법전의 모든 조항은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이체를 위하여 추심상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서 또는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에게 이미 추심된 자금에 대해서 원지시인에게 반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sup>39)</sup> 그러나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에서 원지시인이 중개은행 또는 수익자의 거래은행으로부터는 자금을 반환 받을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반대로 표준법에서는 반환 받을 권리가 있는 원지시인이 이전에 반환 받지 못한 금액까지 상환할 의무를 가진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돌려 받을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sup>40)</sup>

셋째, 지시에 대한 주의의무를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것이다.

---

36) UCC § 4A-402(d).

37) 지급이체(credit transfer)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는 당사자간의 협정에 따라서 다르다. 당사자간의 거래에 관해서 은행의 협정은 표준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은행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이 권리와 의무를 변경할 취지의 합의를 하고 있지 않는 경우, 이 협정은 은행의 고객의 권리와 의무에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거래당사자간의 일정한 권리와 의무는 협정에 의해서 변경할 수 없다. 한정된 범위 혹은 제한된 상황하에서만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UCC § 4A-402(f).

38)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redit Transfers § 14(2).

39) UCC §§ 4A-204(a), 4A-303(a)(b) & (c), UCC § 4A-402(c) & (d).

40)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redit Transfers 1992, § 14(5).

이 사안은 표준법과 제4A편과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다.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은 거래은행이 수신한 지시가 원지시인이 지급을 의도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어떤 의무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자금이체의 원지시인에게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반대로 유엔 표준법에서는 거래은행에게 훨씬 적극적인 역할을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면 수익자명이 구두지시와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지시에서의 계정번호에 의존하는 은행에게 책임을 면제해줄 아무런 조항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표준법에서는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에게 ① 그가 수신한 지시의 내용과 일치하는 지시를 송부해야 되거나<sup>41)</sup> 또는 ② 만약 이 은행이 수신한 지시로서 충분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지시를 수령한 때 또는 지시이지만 불충분한 데이터로 인하여 이행될 수 없고 원지시인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이 은행은 그 문제에 대해 원지시인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sup>42)</sup>고 규정하고 있다.

수익자의 거래은행에 대해서도 유엔 표준법에서는 지시와 일치하는 지급을 이행하거나<sup>43)</sup> 그 지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송부자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sup>44)</sup> 만약 수익자의 계정이 아닌 계정에 자금이 송부되었다면 수익자의 거래은행은 이 지시에 일치하지 않게 행동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sup>45)</sup>

## V. 전자자금이체시스템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관계 분석

### 1. 원지시인과 거래은행

원지시인은 지급지시를 송신하고 원지시인의 은행은 이 지급지시를 수신한다. 이때 원지시인의 은행은 수신한 지시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한다.<sup>46)</sup> 원지시

41) *Ibid.*, § 8(2).

42) *Ibid.*, § 8(4)(5).

43) *Ibid.*, § 10(1).

44) *Ibid.*, § 10(2)(3).

45) Ronald J. Mann, *Payment Systems and Other Financial Transactions*, A Division of Aspen Publishers, Inc., 1999, pp. 202-203.

인의 은행은 지급지시를 수신할 때 원지시인이 지시한 금액을 수령할 권리를 획득한다. 이 권리는 당해은행에 있는 원지시인의 예금계정을 차기함으로써 총 족된다. 은행이 행하는 자금이체는 통상 당사간에서 서명된 정식문서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협정 또는 약정에 의해서 실행된다. 자금이체계약은 위임이므로 지급인의 자금이체지시가 있는 경우 지급은행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자금이체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sup>47)</sup>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이 이 의무에 위반하여 자금이체를 불이행하거나 지체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협정에 의해서 발생되는 의무는 별도로 하고 은행은 지급지시를 수령할 때까지 원지시인의 지급지시에 관한 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자자금이체는 수익자은행이 지급지시를 승낙하는 순간 원지시인의 기본적 의무를 충족시킨다.<sup>48)</sup>

원지시인의 은행이 수익자의 은행에 대하여 지급지시를 행하는 경우 원지시인의 은행은 지급지시를 송신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원지시인인의 은행은 원지시인의 지급지시를 수익자의 은행에 하기 위하여 중간은행에 대해서 수익자의 예금계정에 지급이체하도록 지시하는 것으로 원지시인의 지급지시를 실행한다. 원지시인이 자신의 은행에 지급지시를 행함으로써 이 은행은 원지시인으로부터 지급을 수령할 권리가 발생하고 원지시인의 수권된 예금계정을 차기한다. 수익자의 은행에 지급지시를 송신함으로써 원지시인의 지급지시를 실행하는 중간은행에 대해서 원지시인의 은행은 지급지시를 송신한다. 이 경우 송신자는 수신은행이 지급지시를 수신하였을 때 지급지시에 의한 지급을 실행한 것이 된다.<sup>49)</sup>

이와 같이 원지시인의 은행은 원지시인에 의한 지급지시를 실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원지시인의 은행으로부터 지급지시를 받은 중간은행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원지시인의 은행 혹은 중간은행은 원지시인의 지급지시에 명시된 수익자 이외의 자에게 지급지시를 행한 경우, 지급지시를 잘못 송신한 은행은 실행된 지급지시에 기재금전을 수령할 권리는 없다. 또 지급지시를 수신은행에 송신한 자는 잘못 지급한 금액을 잘못된 지급을 수취한 자로부터 회수할 권

46) UCC § 4A-301(a).

47) 한국민법 제681조.

48) UCC § 4A-406(a).

49)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redit Transfers 1992, Article 5 (6).

리를 가지고 또 그와 같은 지급지시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sup>50)</sup>

또 원지시인은 수익자의 은행 이외의 은행에 지급지시가 이루어짐으로써 본래의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 은행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sup>51)</sup> 물론 원지시인의 은행에 대해서는 항변을 할 수 있다. 잘못된 지급지시로 수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원지시인은 지급지시에 대한 지급을 청구받지 않는다. 이미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원지시인은 잘못 행해진 지급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sup>52)</sup> 이 지급금에 대한 반환보증은 자금이체에 관한 원지시인의 중요한 보호가 된다.

원지시인의 은행이 원지시인의 지시에서 지정된 중간은행에 지급지시를 송신하고 그 중간은행이 지급지시를 실행하지 않을 때 혹은 상이한 수익자에 대해서 지급지시를 행함으로써 자금이체가 행해지지 않았을 경우 원지시인의 은행은 지급지시에 대한 지급을 청구받지 않는다. 또 이미 지급이 완료되었다면 중간은행으로부터 지급금을 회수할 권리를 가진다.<sup>53)</sup> 즉 원지시인은 지급지시에 대해서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중간은행에 대해서는 착오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 2. 수익자의 은행과 수익자

수익자의 은행에 지급지시가 송신되어 왔다면 수익자의 은행은 이 지급지시를 수신하는 대로 자행의 예금계정에 대기한다. 그리고 지시되어 온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반대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한 수익자의 은행은 지급지시를 수신할 때까지 지급지시에 관한 책임은 없다.

지급지시가 원지시인의 은행과 수익자의 은행간에 1개 이상의 중간은행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경우 수익자의 은행이 중간은행에 의해서 이체할 수 있도록 송신되어 온 지급지시를 수신할 때 수익자의 은행은 수익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수익자의 은행은 지급지시를 수신한 때 무조건적으로 수익자

---

50) UCC § 4A-303, 4A-207.

51) UCC § 4A-402(c).

52) UCC § 4A-402(c).

53) UCC § 4A-402(c).

에게 지정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sup>54)</sup> 또한 이 은행은 지급지시의 수령에 관해서 수익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수익자의 은행이 지급을 수령하였을 때 혹은 수익자에게 지급하든지 또는 지급지시의 수령을 수익자에게 통지한 때에 수령이 확인된다.

그러나 수익자의 은행은 수신된 지급지시의 원지시인 또는 자금이체의 송신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 수익자의 은행이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지급지시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된다. 또한 불충분한 데이터를 수신하거나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수신은행은 송신자에 이 문제에 관한 통지를 행할 의무가 있다.

자금이체에 관한 송신자의 지급지시의 목적은 원지시인에 의한 수익자에 대한 지급을 실행하는 것이다. 게다가 그 목적은 수익자의 은행이 지급지시를 수신한 때에 달성된다.<sup>55)</sup> 이 경우 수신은행이 명시적인 합의에 의해 의무화된 지급지시를 실행할 수 없는 경우 수신은행은 송신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sup>56)</sup>

수익자의 은행 이외의 은행이 지급지시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잘못된 또는 부적절한 지시를 행한 은행은 원지시인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 또 지급이 중지되거나 불법적으로 강제된다면 수신은행은 수익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국제자금이체의 경우에는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지시인, 수익자에 있어서 무엇이 발생하였는지 판명하지 않을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수신은행은 원지시인을 보좌하여 자금이체에 관한 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전의 수신은행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요구된다.<sup>57)</sup>

### 3. 원지시인의 은행과 수익자 은행

원지시인과 원지시인의 거래은행 사이의 계약의 해석문제로서 계약자유의 범

---

54) UCC § 4A-404(a).

55) UCC § 4A-405.

56) UCC § 4A-305.

57) 荒畠治雄, “EDIにおける資金振替に関する研究”, 國際商務論の諸問題, 同文館, 1998, 131-132面.

위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원지시인의 은행과 수익자 은행에 대한 입금까지 약속한 것으로 보아 일종의 결과채무에 해당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또한 원지시인과 원지시인의 거래은행 사이의 계약의 해석문제로 보아 당사자간에 특별한 합의가 있으면 계약자유의 원칙이 타당한 범위내에서는 그것에 따르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원지시인의 은행이 원지시인에 대하여 수익자의 은행의 잘못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으로는 볼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sup>58)</sup>

이와 관련하여 *Shrewsbury v. Dupont Nat'l Bank*, 사건<sup>59)</sup>에서와 같이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은 계약상 다른 규정이 없으면 수익자의 거래은행의 과실에 대하여 원지시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판례와 *Rosenberg v. Northwestern Nat'l Bank*, 사건<sup>60)</sup>에서와 같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원지시인의 지급지시를 올바르게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의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원지시인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 4. 원지시인과 수익자

전자자금이체에 있어서는 이체가 실시간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언제 지급이 완료하는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자동입출금기에 의한 계좌이체와 같이 온·라인에 의하여 자금이체가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수신은행 또는 추심은행에 있는 수신인의 계좌원장에 입금기장이 되지 않아도 수신은행의 본점 또는 사무처리본부의 중앙컴퓨터에 수신인계좌에 대한 입금의 정보가 입력된 때, 즉 파일이 경신된 때 입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61)</sup>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원지시인의 지급지시에 일치하는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지시인은 수익자의 거래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미국법원은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원지시인의 지급지시한 계정이 아닌 다른

58) <http://www.kyungwon.ac.kr/~profsjh/eft/eft-relation.htm>

59) 10 F. 2d 632(D.C. Cir. 1925).

60) 180 Minn. 161, 230 N.W. 280 (1930).

61) <http://www.kyungwon.ac.kr/~profsjh/eft/eft-relation.htm>

계정에 지급지시를 이행한 경우에는 수의자의 거래은행은 원지시인의 대리인으로서 원지시인의 지급지시를 엄격히 이행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수의자의 거래은행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sup>62)</sup>

Securities Fund Services Inc. v. American National Bank & Trust Co.<sup>63)</sup>사건에서 법원은 수의자의 거래은행은 자체의 적절한 이행으로 인한 직접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지시인과 수의자의 거래은행은 대리관계에 있으며 수의자의 거래은행은 과실에 대하여 원지시인에게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수의자거래은행의 책임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UCC는 손해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손해에 대해 보상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수의자의 거래은행이 원지시인의 지급지시를 이행하여 수의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않으면 그 결과 간접손해를 유발시킬 것이라는 특별한 환경에 대한 통지를 수신하였거나 그러한 사실이 있으면 통지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 이후 수의자에게 자체지급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는 간접손해를 인정하고 있다.<sup>64)</sup>

## 5. 중개은행과 기타 당사자

전자자금이체처리의 자연 사유가 통신시설의 장애 등 불가항력에 의해서 초래되는 경우 자동어음교환소가 그 사정하에서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인 때에는 책임이 면제된다. 연방전신망에 의해서 거래하는 경우 지시은행인 연방준비은행이 직접자금양도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수의자 거래은행은 신의칙 위반 또는 통상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지시은행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sup>65)</sup> 또한 CHIPS의 경우 시스템상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이들 손해는 관련된 참가은행간에 직접 해결하여야 한다. 더구나 각 참가은행은 CHIPS에 관한 소송에서 생기는 손해 등에 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sup>66)</sup> 미국의 신 지급법전 초안은 지시의 송

62) Peter A. Alces, *Payment Systems*, West Publishing Co., 1993, 557-562.

63) 542 F. Supp. 323 N.D. Ill (1982), aff'd, 718 F. 2d 1104 (7th Cir. 1983).

64) UCC § 4A-404(a).

65) Regulation J, 12 CFR § 210.38(a)(c).

66) CHIPS Rules, Rules 15 (1986).

부자는 지시의 수신, 이행, 제시, 또는 송부에 있어서 합리적인 거래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sup>67)</sup> 이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결과 지시가 분실되거나 지체되는 경우 과실 있는 손해를 입은 모든 자에 대하여 통상 예견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sup>68)</sup> 또한 지급지시를 전달받은 자금 양수인 또는 계정보유기관은 지시인 등에 의하여 송부된 지급지시에 따라서 지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든 자금 청구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 VI. 전자자금이체 방식이 국제전자결제시스템화를 위한 과제

### 1. 보안과 전자인증

전자자금이체 시스템의 경우에 발생하는 주된 위험은 송신은행에 의한 과실, 수신은행 혹은 수신자의 착오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sup>69)</sup> 이와 같은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결제지연에 의해 이익이 상실될 수 있고, 착오에 의해 상대방을 착각시킬 수도 있고,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자금이체시스템의 경우, 데이터의 발신, 전송, 수신확인 등 일련의 절차에 있어 보안을 확보하여 데이터내용의 완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전송되어 온 정보를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상당한 가치를 가질 수 있지만, 만일 정보가 누출되거나 파괴되면 정보가 가지는 가치는 소멸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서류가 가지는 기능이 완전하게 복제될 수 있는 전자적인 거래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종이서류에 의한 정보를 전자문서에 의한 데이터메시지로 대체하여 이것과 동등한 법적인 유효성을 가지게 하는 것, 또한 데이터메시지의 위조, 변조,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문서 이용자는 데이터화된 서류, 운용, 기

67) NPC § 411(1) (1983).

68) Regulation J, 12 CFR § 411(7).

69) Bank of America N. T. S. A. v. Sanati, 19 UCC Rep. Serv. 2d 531 (Cal. App., 1992)

술의 진보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보안확보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자결제 당사자는 사전 협정을 통하여 메시지 작성자의 데이터라는 동일성을 확인을 행할 필요가 있다. 또 메시지의 인증(authentication)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서 합의가 있다면 이에 따르고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된 인증방법의 유효성을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당사자는 법적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혹은 발생이 예측될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용가능한 보안서비스에 의해 구성되는 암호화기법과 같은 보안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sup>70)</sup>

암호화는 송신하는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제3자가 해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디지털신호를 활용함으로써 물리적 존재와 같이 관리할 수 있고 정보를 실은 상태에서 전자적 신호로서 전송되거나 보존한다. 이 디지털서명은 전자정보의 생성, 처리, 발신행위에 관여한 주체가 본인이며, 수신한 데이터는 원상대로라는 것이 보전된다.

디지털서명을 이용하는 자는 공개키를 인증기관에 등록하여 둘 필요가 있다. 이에 의해 전자데이터상에 표창된 정보를 전자데이터와 함께 이전함으로써 어떤 종류의 권리이전의 매체로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의 키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해독술(cryptanalysis)에 의해서 외부에 누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보다 안전한 보안확보를 위해서는 개인비밀키와 공개키를 변칙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키가 빈번하게 생성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이 담당하는 역할이 중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Trusted Third Party : TTP)에게 키의 관리 및 정보 보전을 관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보안확보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데이터가 권한을 가지는 자에 의해서 전송될 것을 보증하는 것, 권한을 가지지 않는 자에 의한 부정조작으로부터 데이터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것 및 영업상의 기록과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지지 않는 접속을 방지하는 것이다.<sup>71)</sup> 보안절차의 합리성 판단에 대해서는 메시지의 무결성(integrity), 부인방지(non-repudiation) 등의 요소가 필요할 것이다.<sup>72)</sup>

70)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The Commercial Use of Interchange Agreements for Electronic Data Interchange, TRADE/WP. 4/R. 1133/Rev.1. 1995, p. 29.

71) A. Boss, "Electronic Data Interchange Agreements: Private Contracting Toward a Global Environment", *Nw. J. Int'l L & Bus.* 31, p. 54 (1992).

## 2. 국제전자상거래와 국제전자자금이체

국제전자상거래에서 국제간의 전자자금이체는 전통적인 환어음 등의 금융서류와 운송서류 등의 상업서류에 대한 추심이체(debit transfer)방식과는 달리 원지급지시인(originator)의 지급지시에 따라 송금은행과 중개은행을 통하여 지급은행이 수익자에게 대금을 전자적으로 이체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지급이체에 관한 표준법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입법에 대한 표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마련된 것이며 이는 협약의 형식은 아니다. 특히 지급이체(credit transfers)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추심이체(debit transfers)를 제외하여 지급이체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표준법을 국제간의 지급이체에만 적용하기로 한 것은 국내지급이체와 국제지급이체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가 차이가 있고, 나아가 국내의 지급이체에 관한 각국의 해결책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그 결과 표준법이 모든 지급이체에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 문제에 부딪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의 적용범위(sphere of application)를 보면 다음과 같다.<sup>73)</sup>

첫째, 이 법은 송신은행(sending bank)과 수신은행(receiving bank)이 다른 국가에 있는 경우의 지급이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둘째, 이 법은 통상의 영업의 일부로서 은행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지시를 실행하는데 종사하는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셋째, 이 법의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은행의 지점과 독립사무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은행으로 간주한다.

이와 같이 표준법은 자금이체의 국제성(internationality)과 아울러 지급이체(credit transfer)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성의 기준은 송신은행과 수신은행이 다른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따라서 지급이체를 실행하는 사슬(chain)에 속해 있는 어떤 송신은행과 그 수신은행이 다른 국가에 있어야 한다. 송신은행과 수신은행이 두 개의 국가에 있으면 지급이체는 국제적인 것이고, 표준법은 연쇄의 각 부분에 대하여 적용된다. 지시인의 은행과

72) 荒畠治雄, 前掲論文, 137-139面.

73)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redit Transfers, Article 1.

수신인의 은행이 동일국가에 있는 경우에도 국제적일 수 있다. 예컨대, 지시인의 은행과 수신인의 은행이 모두 A국에 있고 두 은행간의 이체가 B국의 통화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시인의 은행이 B국의 환거래은행(correspondent bank)에 지급지시를 송신하여 수신인의 은행의 계좌에 지급이체할 것을 지시하였다면, 이 경우의 지급이체는 송신은행과 수신은행이 다른 두 국가에 있는 경우이고 따라서 표준법이 적용된다.

표준법의 적용은 다른 국가에 있는 두개의 은행의 존재에 달려 있기 때문에 지시인과 수신인이 동일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표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은행의 지점 또는 독립사무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은행으로 간주된다. 그리하여 지시인과 수신인이 각각 동일은행의 다른 국가소재 지점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의 이체는 하나의 은행만이 관련될지라도 표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또한 표준법은 통상의 영업의 일부로서 은행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지시를 실행하는 기관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또한 표준법은 국제지급이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법률충돌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sup>74)</sup>

그러나 국제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은 여타 결제시스템에 비하여 가장 용이하게 도입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국제결제수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6-1> 주요국 비현금 지급수단별 이용비중 (1997년, 건수기준, %)

국가	어음·수표	계좌이체	신용·직불카드
한국	39.0	50.1	10.9
미국	73.2	3.8	23.0
영국	30.5	38.3	31.1
프랑스	41.7	27.8	19.5
독일	5.7	90.2	4.1
벨기에	8.0	67.8	23.4

\* 한국은 1998년 이용실적

자료 : BIS, Statistics on Payment Systems in The Group of Ten Countries, 1998.

74) <http://www.kyungwon.ac.kr/~profsjh/eft/ml-ict.htm>

### 3. 한국의 자금이체와 전자자금이체법의 제정

한국에서의 외화자금이체는 한국은행에 개설된 외화예수금계정을 통하여 금융기관간에 미달러화 및 일본엔화 표시의 외화자금을 이체하는 업무가 중심이 되고 있다. 외화자금이체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금융기관간 외화자금이체, 금융기관 본·지점간 외화자금이체와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개설한 외화예수금 계정에 외화자금을 예치하거나 인출하는 업무로 구분된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외화예탁 및 외국환평형기금 콜론 등 기타 외화자금업무도 한은금융망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다.

금융기관간 외화자금거래에 따른 외화자금이체는 이체 신청기관의 외화예수금계정에서 자금이 출금되어 수취기관의 외화예수금계정에 입금 처리된다. 외화예수금계정에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원화자금이체와 마찬가지로 자금이체 신청내용을 대기파일에 수록하였다가 잔액부족이 해소되면 우회선입선출 방식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결제한다. 외화자금거래에 수반되는 원화자금이체는 1999년 6월부터 원화자금이체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원화자금이체를 선일자거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화자금이체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금융기관 본·지점간 외화자금이체는 한국은행 국제국과 부산지점에 개설되어 있는 외화예수금계정을 통하여 금융기관 본·지점간에 외화자금을 이체시키는 업무이다. 외화자금 예치는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개설한 외화예수금 계정에 외화자금을 예치하는 업무로서 신청기관이 한은금융망을 통하여 외화자금 예치를 신청하면 신청내용을 마감시간까지 모아서 지정처리시점에 일괄 처리하는 점이 신청 즉시 결제되는 자금이체와 다르다. 이는 외화자금 예치가 한국은행의 코레스 은행인 뱅커스트러스트 은행 뉴욕지점(BTC-NY)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뉴욕간의 시차로 인하여 실제 달러화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한국은행의 장부상 당일 예치된 자금이 당일 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외화자금 인출은 금융기관이 한국은행 국제국에 개설한 외화예수금계정에서

외화자금을 출금하는 업무이다. 외화자금 예치가 신청 마감시간까지의 접수분을 지정처리시점에 일괄 처리하는 반면 인출은 인출신청 마감시간 이내에서는 신청 즉시 처리된다. 외화자금의 예치와 마찬가지로 인출도 한국은행 장부상의 외화예수금 계정을 변동시키는 것이며 실제 외화자금의 출금은 한국은행의 코레스은행인 뱅커스트러스트 은행 뉴욕지점에서 이루어진다.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결제된 금액중 한은 금융망의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1998년의 경우 한은 금융망을 통하여 결제된 금액이 전체 결제금액의 61.7%를 차지하고 있다.<sup>75)</sup>

우리 나라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제로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을 제정하였지만 자금결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전자자금이체법은 마련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전자자금이체법을 제정하여 현재 자체 약관으로 자금이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금융권을 견제하여 기업과 이용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결제의 안정성 및 유용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전자자금이체거래에 관련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행약관의 정비를 포함한 포괄규정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

75) 한은금융망을 통한 결제동향을 보면 도입 초기인 1995년 일평균 결제규모가 18.3조(3,727건)에서 1999년 상반기에는 64.5조원(4,735건)으로 3.5배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당 평균 결제금액이 1995년의 49억 원에서 1999년 상반기에는 136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취급업무별로는 원화자금이체가 1995년의 일평균 16.6조원(2,932건)에서 1999년 상반기에는 62.5조원(4,156건)으로 증가하였는데 원화자금이체가 한은금융망을 통한 자금결제금액의 약 97%를 점하게 되었다. 한편 원화자금이체중 실시각 총액결제방식에 의한 참가기관의 일평균 자금이체규모는 1995년 중 10.5조원(1,765건)에서 1999년 상반기 50.0조원(3,265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어음교환, 은행지로 및 은행공동망 거래에 따른 은행간 차액결제규모는 일평균 6.1조원에서 12.5조원으로 증가하였다.

&lt;표 6 - 2 &gt; 한은금융망 이용실적

(일평균, 십억원, 건)

	1995	1996	1997	1998	1999.1-6
결제건수	3,727	4,286	5,053	4,781	4,735
원화자금 이체	2,932	3,522	4,289	4,100	4,156
(총액결제)	(1,765)	(2,313)	(3,099)	(3,051)	(3,265)
(차액결제)	(1,167)	(1,209)	(1,190)	(1,049)	(891)
국고금 수급	618	622	644	576	526
한국은행 대출	164	131	103	73	45
국공채 거래	13	11	17	32	8
외화자금이체 건수	15	15	17	19	15
결제금액	18,267	24,505	32,191	47,954	64,543
원화자금 이체	16,596	22,930	30,922	44,135	62,546
(총액결제)	(10,492)	(15,158)	(22,146)	(34,479)	(50,001)
(차액결제)	(6,104)	(7,772)	(8,776)	(9,656)	(12,545)
국고금 수급	477	531	598	652	789
한국은행 대출	973	845	471	814	806
국공채 거래	221	199	200	2,353	402
외화자금이체 금액*	68	81	305	309	652

\* 백만달러

자료: 한국은행, 우리 나라의 지급결제제도, 2000, 2.

## VII. 結論

최근의 인터넷 등 개방형의 네트워크 기반은 새로운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면서 기업과 소비자 중심의 전자상거래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업간의 국제전자상거래는 그 환경과 신뢰기반이 조성되지 못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뢰성과 경제성이 있는 전자결제시스템의 정착은 전자상거래를 확산시키는데 선결 요건이 된다. 미국은 전자결제와 관련된 법제적, 기술적 기반을 이미 구축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기업간 거액결제가 용이하다.

또한 전자화폐, 신용카드, 직불카드, 그리고 전자자금이체와 같은 전자결제수단은 특정국이나 은행간에 이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상관습을 달리하는 지구촌 전체의 국제상거래 당사자간 안정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글로벌시스템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간 전자상거래에 따른 전자결제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하며 아울러 문서의 전자화 및 전자선판증권의 유통성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이 제정되어 전자상거래를 행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주문과 계약이 전자적으로 온라인(on-line) 또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더라도 대부분의 대금결제는 오프라인(off-line)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금결제의 전자화는 데이터의 발신, 전송, 수신확인 등 일련의 전자자금이체에 있어 데이터 내용의 보안성과 완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전자상거래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입법예와 기술기반을 모델로 하여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신뢰성 있는 전자결제시스템 운영과 전자결제와 자금이체와 관련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은 기업간 거액거래를 위한 전자상거래시장에서 거래당사자간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며 아울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는데 있어 촉매가 될 것이다.